Yeosu
Web Contents

2024년 04월 29일 22시 21분

목차

목차 2
자동차등록 3
수수료 3
관련법규 3
구비서류 (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) 3

수수료

구 분	증지대	등록세
저당권설정	채권가액의 4/1,000	채권가액의 2/1,000 (설정금액 750만원까지는 하한가 15,000원 적용)
저당권이전	채권가액의 4/1,000	15,000원
저당권변경 또는 말소	1,000원	15,000원

관련법규

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, 자동차등록령 제31조~35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46조

구비서류 (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)

저당구분	구비서류
설정	-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-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(채권,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/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) -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/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- 자동차 등록증 - 신분증(위임시 - 위임장(저당권자인감날인), 위임자의 인감증명서,위임받은자의 신분증) ※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
말소	-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-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- 설정계약서 또는 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 -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- 자동차 등록증 - 신분증(위임시-위임장(저당권자인감날인), 위임자의 인감증명서,위임받은 자의 신분증)
이전 (채권자변경)	-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- 채권자의 양도증명서 (신·구저당권자의 인감날인) - 신·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) - 자동차 등록증

	▪ 신분증(위임시-위임장(신·구 저당권자, 차량소유자 인감날인), 위임자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),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)
변경 (채무자변경)	▪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▪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(저당권자, 신·구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) ▪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1부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1부) ▪ 자동차소유자(채무자) 인감증명서 1부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1부) ▪ 자동차 등록증 ▪ 신분증(위임시-위임장(신·구 채무자, 차량소유자, 저당권자 인감날인), 위임자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),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)
	▪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, 제출시 인감날인을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
Web Contents

여수시